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사 료 의 수 집 · 편 찬 및 한 국 사 의
보 급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사보급법”）」 일부 개정(법률 제17955호, 2021.3.23.)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고(안 제19조 삭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부 운영사항(방법, 절차,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의 처리, 응시수수료,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소속 직원 수당 지급 등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개정, 제20조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규정 삭제(안 제19조 삭제)
- 나.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정도를 검정하기 위해 시험종류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 (안 제16조제3항)
- 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 징수 (안 제16조제4항)
- 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5항)
- 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안 제16조제6항)

- 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사시험 문제 출제, 채점, 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 (안 제16조제7항)
- 사.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8항)
- 아. 시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 시 시험장 대관 협조 (안 제16조제9
항)
- 자. 시험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처
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0조)
- 차. 알기쉬운 법률용어 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협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31. ~ 5. 10.)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복제·구매하거나 대여·기증·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를 “사료를 위탁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이 신청된”을 “수탁”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자문에 응한다”를 “자문을 위하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자문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의 종류, 성적 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⑥ 한국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포함하여 연속 4회 한국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소속 직원 및 교육행정(연구)기관 직원 등을 각각 시험 위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지정·위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시험 위원 및 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또는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 문항 출제 및 시험 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장소의 제공, 시험 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6조에 의한 한국사 시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료의 수집) ① 위원회가 사료를 수집하는 때에는 대차 (貸借), 복제, 구매, 수증(受贈), 수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사료의 수집) ① 위원회는 복제 · 구매하거나 대여 · 기증 · 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 료를 수집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료의 수탁)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 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료의 수탁) ① ----- ----- 사료를 위탁하러-- ----- ----- -----.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 료의 가치 · 보존상태 및 수탁조 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수탁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생 략)	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사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자문위원회(이하 “시 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자문위원회를 둔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계획 2. 문제의 출제와 선정 3. 시험 채점 등 관리
③ 시험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③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의 중

현행	개정안
<u>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u> ④ <u>위원장은 시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u> ⑤ <u>시험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u> 1. ~ 3. (생략) ⑥ <u>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류, 성적 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u> ④ <u>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u> ⑤ <u>위원회는 제3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u> ⑥ <u>한국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포함하여 연속 4회 한국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소속 직원 및 교육행정(연구)기관 직원 등을 각각 시험 위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지정·위촉할 수 있다.</u>
<u><신 설></u>	<u>⑧ 제7항에 따른 시험 위원 및 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신 설></u>	<u>⑨ 위원회는 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또는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 문항 출제 및 시험 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장소의 제공, 시험 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제19조(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이하 “정보화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한다.</u> 1. <u>역사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u> 2.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u> ② <u>정보화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u> ③ <u>정보화심의회는 정보화심의회 위원장이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정보화심의회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역사분야 정보화 사업의 업무 개선</u> 2. <u>역사분야 정보화의 장기 목표와 전략</u> 3. <u>역사 정보 표준화 방안</u> 4. <u>역사분야전문정보센터 사이의 업무 협조와 조정</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 원회의 위원장은 제16조에 의한 한국사시험 운영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부	
연 락 처	(044) 203 - 6879